

● 제30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1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508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이영실 의원외 9명
- 나. 제안일 : 2021. 5. 28.
- 다. 회부일 : 2021. 6.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규 민간위탁을 통해 통합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 및 가족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률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과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시설이 시설 유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등 관련 규정이 동일한 바, 시설 유형에 맞춰 민간위탁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규정 정비(안제19조)

- 현재 광역단위인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않고, 상위법에 따라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을 사회복지시설¹⁾에 맞춰 개정(안제19조제3항 및 제4항)²⁾하고, 현행 조례의 센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터 지정 운영 관련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p>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u>설치·운영 및 지정</u>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u>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u>설치 및 운영 및 지정</u> 등에 관한</p>	<p>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 ----- ----- --- <u>설치·운영</u>----- ---</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u>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③ 시장은 센터의 <u>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u></p>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민간위탁 사항 분리 규정(안제19조)

-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하나의 조항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만을 관련 사항만 분리하여 별도의 규정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달리, 현행 조례에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은 현행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현행	개정안
<p>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 ----- ----- ----- --- 설치·운영---</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p>

□ 외국인주민 가족 지원사항 (안 제7조제1항 신설)

- 개정조례안(안 제7조제1항)은 각 호로 규정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사항) 중 외국인주민이 아닌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결혼

이민자가 지원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문체계에 맞게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개정안
<p>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략)</p> <p>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u>결혼이민자</u> 등의 보호·지원</p>	<p>제7조(지원의 범위) ① -----</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p> <p>-----</p> <p>----- <u>외국인주민</u> -----</p> <p>-----</p>

3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신규 민간위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사회복지시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겠음.
-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광역단체 중 서울시만 설치·운영 중이다 보니 가족복지전달체계로서 자치구센터나 중앙센터와 가족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는 바, 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운영 예정인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는 25개 자치구센터들과의 협력체계와 소통 구조를 충분히 마련하여 광역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임.

붙임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시설 현황

○ 외국인지원시설 18개소

센터명	위 치	규모 (㎡)	'21예산 (백만원)	센터장	위탁기관	인력	개관일	비고	
합 계 (18개 시설)			7,492	-	-	99명	-	-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	종로구 종로 38(서린동), 4~5층	822	1,881	송원섭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1명	'08. 1. 23	시소유	
서남권글로벌센터	영등포구 도신로 40	935	762	김동훈	(사)이주민센터친구	9명	'14. 10. 15.	시소유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중구 마른내로 146(청일빌딩), 7층	289	769	이채희	(사)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12명	'15. 1. 1	임차	
소 계			1,588	-	-	30명	-	-	
외국인 노동자 센 터 (6개소)	강 동	강동구 성안로 13길 56	46	263	이상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5명	'08. 3. 15	구 복지관내
	금 천	금천구 가산로 129	65	241	윤명선	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	5명	'07. 5. 1	구 복지관내
	성 동	성동구 무학로 6길 47-1	452	331	석원정	(사)노동인권회관	5명	'15. 3. 1 (구 위탁 '01.12.14)	시소유
	성 북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	23	250	이병준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5명	'09. 4. 30	구 복지관내
	양 천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59	70	253	김광제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5명	'09. 4. 28	시 복지관내
	은 평	은평구 은평로 21길 14-26	37	250	오은석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5명	'08. 3. 13	구 복지관내
서울글로벌 문화체험센터(명동)	중구 명동8길 27 M플라자 5층	692	474	이지영	서울관광재단	5명	'09. 3. 16	무상임차	
소 계			1,768	-	-	19명	-	-	
빌리지 센 터 (7개소)	연 남	마포구 동교로 219, 3층	158	239	유 암	-	2명	'08. 1. 31	임차
	역 삼	강남구 역삼로7길 역삼문화센터 5층	96	247	칼릴자데 니하트	-	3명	'08. 4. 17	구소유
	서 래	서초구 서래로 28, 3층	160	306	임지미	-	3명	'08. 6. 4	임차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로 211, 5층	158	305	캐서린 코르테자	-	3명	'08. 7. 14	임차
	이 촌	용산구 이촌로 224, 3층	138	237	황향화	-	2명	'08. 7. 1 4	임차
	성 북	성북구 성북로 134, 1층	245	135	크나이더 한일센터	-	3명	'09. 11. 29	舊 성북 2동청사
	금 천	금천구 가산로 116 3층	454	299	박철순	-	3명	'14. 9. 1	임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영등포구 문래로 164 5층	765	250 (현대차 300 별도)	신혜영	(사)이주민센터친구	3명	'15. 9. 18.	임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개소

센터명	위치	규모 (㎡)	20예산 (백만원)	센터장	위탁기관	인력	개관일	
합 계 (25개소)			13,679	-	-	409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개소)	종로	종로구 종로53길 29, 2층	714	383	박지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1	'10. 1. 1
	중구	중구 퇴계로 460, 10층	244	437	정주원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3. 9. 12
	용산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공영주차장 3층	600	435	한선규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13	'10. 1. 1
	성동	성동구 무학로 6길 9	485	521	김은정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5	'11. 1. 1
	광진	광진구 아차산로 24길 17, 5층	130	473	윤명자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15	'10. 2. 1
	동대문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7층	680	806	이영순	사)한국건강가족실천운영본부	26	'06. 9. 1
	중랑	중랑구 용마산로 369	563	621	김영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9	'10. 1. 1
	성북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 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551	514	이윤정 정세호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7	'07. 2. 1
	강북	강북구 한천로129길 6 (번동) 2층	444	545	한은주	성신여대 산학협력단	19	'10. 1. 1
	도봉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303	567	박우철	학교법인 덕성학원	18	'11. 1. 19
	노원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234	604	장사열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17	'10. 3. 1
	은평	은평구 은평로21가길 15-17	732	516	강부자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15	'10. 1. 1
	서대문	서대문구 증가로 244	366	634	강주현	학교법인 이화학당	19	'10. 1. 1
	마포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아동복지회 지하2층	843	535	이선경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19	'10. 1. 1
	양천	양천구 남부순환로 88길 5-7 지층	160	488	김성영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16	'11. 1. 1
	강서	강서구 강서로 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800	660	박정숙	강서희망나눔 복지재단 (자치구출연기관 직영)	22	'10. 1. 1
	구로	구로구 우마2길 35	1331	820	정종운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25	'10. 1. 1
	금천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1층	686	608	전종미	성신여대연구산학협력단	16	'10. 1. 1
	영등포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5	457	766	강현덕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3	'07. 3. 1
	동작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63-26 2층	758	515	김예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16	'08. 3.12
	관악	관악구 신림로 3길 35, 김삼준 다문화복합시설 3층	552	606	변주수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17	'10. 1. 1
	서초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관 2층	325	23	한난영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	'16. 7. 1
	강남	강남구 개포로 617-8	375	382	신민선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10	'10. 2. 1
	송파	송파구 마천로 41길 12	330	610	박연진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11	'07. 4. 1
	강동	강동구 양재대로 138길 41	372	610	이광진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20	'10. 1. 1